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The Basic Analysis for Estimating the Value of Household Work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 수 문 속 재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 사 최 민 영

Dept. of Consumer Studies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 : Sook-Jae, Moon

Dept. of Consumer Studies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Master. : Min Young, Choi

〈목 차〉

- | | |
|------------------|---------------------------------|
| I. 서론 | V.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통계자료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V. 기초통계자료의 조사배경 | |

〈Abstract〉

This study is the basic step of including the economical value of household labor into the existing GD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statistical data; 『Economical Active Population Survey』, 『Time Used Survey』, 『Basic Wage Structural Survey』, and 『City Household Survey』 for that step and will help people to re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economical value household work. Economical Active Population Survey classifies housework as economically non0productive activity. Time Use Survey does not have an clear classification for action. Basic Wage Structural Survey must give subdividable information on wage. City Household Survey should include more details and more data of household durables.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초반 가사노동의 경제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본격화되면서 거의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무보수 노동가

치의 측정을 위해 몇몇 국가는 대단위 시간사용조사(Time Use Survey)를 실시하였으며, UN은 1993년 '국민계정' 권고 안에 국민계정의 가계부문에 비시장경제활동을 포함함으로써 가계생산에 대한 위성계정을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통계청에서 실시된 「1999 생활시간조사」가 발표됨으로써 무보수 노동의 가치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GNP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이미 1997년에 수립한 1998-2002년까지의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를 세분화하여 조사표를 보완하며",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제도적 반영을 위해 가사노동량 파악을 위한 생활시간활용조사를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국민계정체계에 가사노동에 대한 위성계정을 설치하며", "가사노동가치의 적용분야를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위성계정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전 국민의 생활시간조사가 1999년 9월 실시되었으며 2001년 현재 그 결과를 토대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사노동에 사용된 시간량, 임금률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과거 연구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가사노동의 행동분류가 생활시간조사를 통해서 통일됨으로써, 행동분류에 있어서 연구들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대체임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는 보이지만, 행동분류에 따라 대체직종을 적용하는 기준을 둠으로써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하는데 쓰여지는 기초통계자료에서 가사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이재인, 1997; 김준영, 2000; 김태홍, 2000). 가사노동이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어 측정과 집계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남성 우월적인 통계자료에서 여성의 노동 실태가 적절하게 통계적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등 가사노동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초통계들이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통계자료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계점을 밝히고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위성계정에 가사노동이 포함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알고,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안된다. 첫째,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초통계자료의 조사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기초통계자료의 유용성 및 한계점을 분석한다. 셋째, 각 기관에서 실시되는 기초통계자료의 체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사노동의 생산성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일을 생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초로 가정생산(household production)의 개념으로 정의한 사람은 마가렛 리드(Margaret Reid)이다. 리드(1934)는 "가사노동이란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행해지는 무보수의 활동으로 그런 활동들은 소득, 시장조건, 그리고 개인의 성향과 같은 환경이 가정 밖의 누군가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시장재화나 유급의 서비스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로 하였다. 리드의 가정생산이론에서는 가족구성원에 의하여 가족구성원을 위해 수행되는 무보수활동을 가정생산으로 보고 있으며, 가정의 무보수활동 중에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에 대한 위임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활동이 임금노동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면 그 활동은 생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리드의 가정생산이론에서 가사노동에 포함되는 활동은 '제 3자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그 활동은 생산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한편, 가사노동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사노동을 분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가사노동활동들을 규정하는 것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인 작업이 된다. 이에 대해 Reid(1934)는 가정생산이 관리(management), 작업(performance), 가정노동(homework), 주택 외부의 노동, 위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원 돌보기, 기타 등 6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가사노동에 포함되는 활동을 분류하면 식생활관리, 의생활관리, 주생활관리, 가족관리, 경영 등 5가지로 분류되며 가사노동시간은 가사노동에 대한 정의나 분류내용에 따라 그 하위영역에 차이가 있다.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관련된 경제학적 이론으로는 Becker의 가계생산이론(Household Production Theory)이 있다. 가계생산함수란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용역이 조합되어 가계 내의 내구재 사용이나 가계원의 시간투입으로 가계에서 소비되어지는 가계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나타내주는 함수이다(문숙제 · 정순희 · 허경옥, 2000). 가계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Z = z(X, H, K)$$

- X =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
- H = 가사노동시간,
- K = 기타가계생산요소(ex.기술, 내구재 등)

가계생산함수를 기본으로 가사노동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함수에서 볼 수 있듯이, 3가지의 요소- 1)시장에서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 2)가사노동시간, 3)기타가계생산요소 -가 필요하다. 기존에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가사노동 가치에만 초점을 두어서 평가를 하였다. 즉, 가계생산함수에서는 2)가사노동시간에만 초점을 두어서 그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에서의 한계점을 언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위성계정에서 가계부문을 인정하는 주요 목적은 가계가 단순히 소비

의 단위가 아닌 생산의 단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계생산과 그로 인해 창출된 소득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사노동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시간에 대한 노동의 가치만을 산정하기 보다는 가계를 하나의 생산 주체로 생각하여, 가계 생산물의 생산에 투입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방법

가사노동의 가치를 가계위성계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에는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입물 접근법과 산출물 접근법이 있다. 투입물 접근법에 의한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하는 방법은 가사노동을 위해 사용된 시간, 소비, 자본재 비용, 임금 등 가사노동에 포함된 다른 투입물 등을 고려하여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투입물 접근법에 의한 방식에는 시장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요구임금법이 있다. 그리고 시장대체비용법은 다시 총합적 대체법과 전문가 대체법으로 나뉜다.

산출물 접근법은 가정에서 생산된 것의 가치를 시장의 거의 같은 품목과 비교하여 가정에서 수행된 노동을 화폐로 추정하는 것이다. 즉, 같은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가계생산물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 것으로(Hirway, I., 1998, Hirway, I., 1999), 무급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산출물의 가치와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치를 같게 하는 것이다(Sousa-Poza, A., 1999).

3.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통계자료

1) 관련 통계자료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사노동에 사용된 시간량, 임금률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표 1>에서는 한국의 노동과 생산에 대한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범주가 크게 시간사용, 노동력 & 고용, 경제적 자산, 생산 및 임금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

〈표 1〉 한국의 노동과 생산에 대한 기초통계조사

범 주	기 초 통 계 조 사	조사기관	조사 간격
시 간 사 용	- 국민생활시간조사	통계청	5년
노동력과 고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1달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 고용구조조사	통계청	5년
	- 여성고용조사	한국여성개발원	5년
경제적 자산	- 도시가계조사	통계청	1년
	- 국부통계조사	통계청	10년
	- 가구소비실태조사	통계청	5년
	-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1년
	-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1년
생산 및 임금	- 임금구조기본조사	노동부	1년
	-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부	1달
	-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구조조사		
	- 여성고용조사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가치평가방법과 통계자료는, 정영금(1989), 김선희(1991), 김정희(1994)와 같이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기 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소표본을 토대로 가정주부의 가사활동에 대한 활동시간을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임금을 곱하여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설문지를 이용할 경우, 각각의 연구에서 가사노동 행동분류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있고 응답률마저 저조해서 가치평가의 자료에 있어서 객관성 떨어지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김태홍(2001), 김준영(2001), 문숙재·윤소영(2001)의 연구는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된 이후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생활시간조사라는 객관적인 시간사용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통일된 행동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부터 임금을 데이터의 사용은 대부분이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임금률에 대해서도 같은 데이터를 사용할 지라도, 각각 다른 세부직종을 대체직종으로써 정하였기 때문에 그 이용상에 있어서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기초통계자료의 분석물

통계자료들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공식 통계에 대해서 여성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이재인(199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식통계 중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리고 「고용구조조사」, 세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그 속에 수용된 성별분업의 이데올로기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Margarita F. Guerrero(1997)의 연구에서는 필리핀의 통계자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 (1) Objectives: 통계자료의 필요성과 목적(2) Basic Considerations in the Design of the Survey: 조사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분석 (3) Field Operations: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 (4) Sample Design and Selection: 표본 설계와 선택 (5) Questionnaire Design and Processing Issues: 설문 조사시의 질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통계자료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6) Dissemi-

nation of Results : 결과의 보급.

본 연구에서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하는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의 분석 틀을 위에 제시한 Margarita F. Guerrero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6가지 기본 틀을 수정·변형하여서 각 통계자료에 적용시켜 분석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가계생산함수를 가사노동가치평가 방법 중에서 투입물 접근법에 의한 가치평가 방법과 연결시켜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공식에서, 노동의 가치는 가사노동의 시간과 적절한 임금으로 가치평가된 값을 말한다. 여기서 가사노동에 사용된 시간은 생활시간조사에 의해서 측정된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임금률이 노동의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임금률 데이터를 통해서 그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가사노동을 위해 사용되는 오븐, 자동차 등의 고정자본과 내구재의 사용에 대해서 그 소비가 첨가되어야 하는데, 노동의 가치에서 주거, 자동차 등과 관련된 생산세의 철폐와 생산보조금에 대한 공제가 먼저 이루어져서 순 부가가치가 나오게 된다. 순 부가가치

에다가 가사노동시 사용된 가계 내구재의 감가상각에 대한 소비를 첨가해주면 총 부가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총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과 비교될 수 있는 값이 된다. 그러나 가사노동 투입물에 대한 총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에 사용된 중간소비가 첨가되어야 한다. 이는 가사노동시에 소비된 원재료 등을 의미한다. 이 자료는 가계소지지출조사에서 수집될 수 있다.

투입물 접근법에서 사용되는 요소들과 가계생산함수에서 사용되는 요소들을 관련시켜본다면, 먼저 노동의 가치는 가계생산함수에서의 H=가사노동시간에 해당하고, 고정자본의 소비는 K=기타가계생산요소 중에서 가사노동에 필요한 장비와 관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중간소비는 X=시장에서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에 해당한다(그림 1).

가계생산함수이론과 투입물 가사노동 가치평가법과 연결시켜 볼 때, 크게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이루어 졌던 가사노동 가치평가 부분과 자본소비와 중간소비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그림 2). 첫 번째, 가사노동 가치평가 부분에서는 3가지의 중요한 기초통계자료가 필요하다.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해서, 활동에 사용된 평균 시간량에는 통계청에서 조사되는 「국민생활시간조사」

〈 투입물 접근법에 의한 가사노동 가치평가 〉

가사노동의 가치¹⁾ + 생산에 대한 세금 - 생산에 대한 보조금 = 순 부가가치²⁾ (1)

순부가가치 + 고정자본의 소비³⁾ = 총 부가가치⁴⁾ (2)

총부가가치 + 중간소비⁵⁾ = 총 산출⁶⁾ (3)

1) 가사노동의 가치 : 가사노동 시간과 적절한 임금으로 가치평가 된 값
가사노동의 가치 = 활동에 사용된 평균 시간량 × 임금률 × 인구수

2) 순 부가가치 : 물질과 서비스를 구입한 비용이 공제되고 고정자본소비를 제외한 후 산출물의 가치

3) 고정자본의 소비 : 가계생산과정에 사용된 가계내구재의 감가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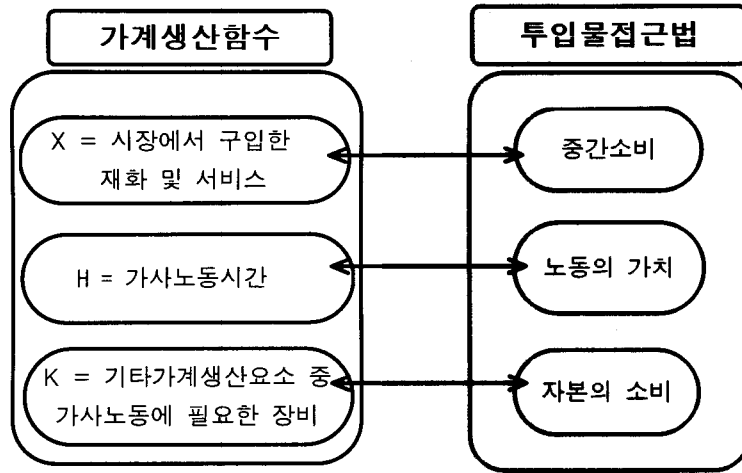
4) 총 부가가치 : 물질과 서비스를 구입한 비용은 공제되나 고정자본소비를 포함하는 산출물의 가치

5) 중간소비 : 가계에 의해 획득된 비내구재와 서비스로 가정생산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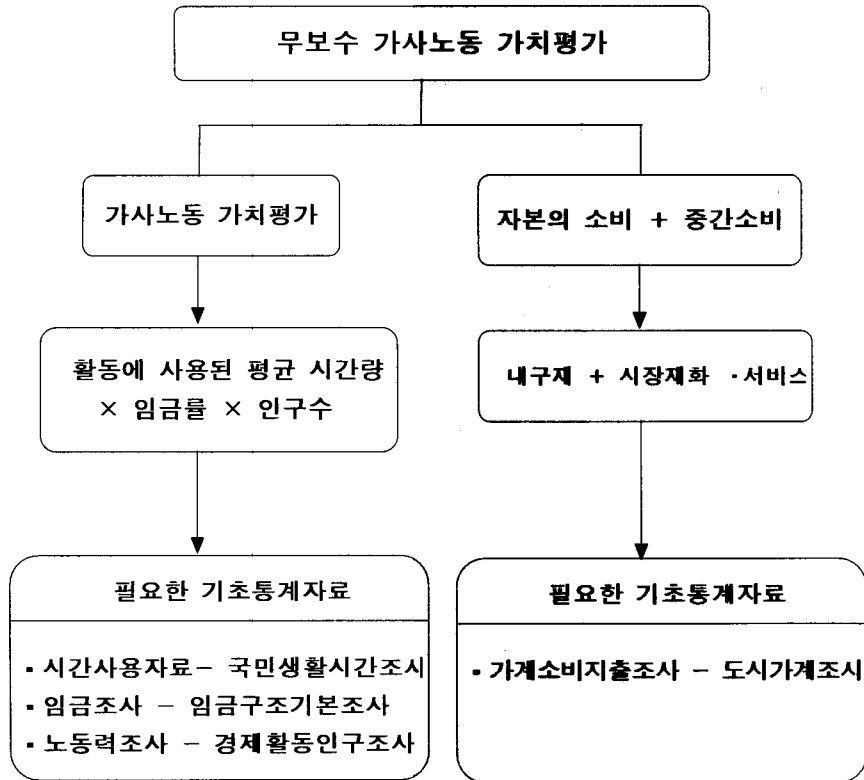
6) 총 산출 :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자료 : Varjonen, J. and Hamunen, E(1999), Eurostat(1999)

〈그림 1〉 가계생산함수와 투입물접근법의 요소



〈그림 2〉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를, 임금률은 노동부에서 발간되는 「임금구조기본조사」를, 인구수는 통계청에서 조사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본소비와 중간소비 부분에서는 내구재와 시장제화·서비스에 대한 기초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로는 가계소비지출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지출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통계자료 중에서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평가의 자료로 쓰이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를 지닌 「도시가계조사」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평가의 두 부분에서 필요로 되는 기초통계자료 4가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V. 기초통계자료의 조사배경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기초통계자료의 일반적인 조사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 틀은 Margarita F. Guerrero(1997)의 기본틀을 수정하여서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문항, (4) 조사방법, (5) 조사의 표본설정, (6) 조사결과와 보급의 6가지 사항이다.

1.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노동공급, 노동투입,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 파악, 고용창출 등을 위한 정부정책입안 및 평가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이다(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조사항목은 크게 인적항목, 확인항목, 취업자항목, 실업자항목, 비경제활동인구 항목, 공통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조사”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조사로는 인구주택총조사, 생활시간조사, 도시가계조사 등과 같은 사회통계조사들이다. 이러한 가구단위의 조사는 주로 전통적인 혈연가족의 형태를 가정한 위에 질문지가 설계되고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구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재에는 그 부적절성이 지적되고 있다. 즉, 가족구성원 공동의

복지라는 개념은 흔히 가족 구성원 개인의 복지와의 괴리가 있으며, 때문에 가구단위의 조사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사항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인(1997)은 질문지 구성에서 가구주 개념의 개입으로 인해 가구주는 남성이고, 여성은 가사노동 담당자가 됨으로써 여성의 생산활동, 특히 비공식 부문의 생산활동을 누락하기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노동력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지난 1주간을 기준으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노동력상태를 파악하는 현상태 접근법(current status approach) (또는 노동력접근법)과 지난 1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평상상태를 기준으로 유업자와 무업자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평상상태접근방법(usual status approach)(혹은 유업자 접근법)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노동력접근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조사로서,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화폐가치로 인정되는 일이 무엇이나에 의해 특정 활동을 경제활동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폐가치가 인정되는 일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노동력 개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노동력 접근법은 가사노동을 경제활동으로 구분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주기는 매월이며,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이다. 조사대상기간 전후로 하여 1주간씩 준비조사기간과 실지조사기간이 있다. 조사기간이 매월 15일로 정해놓은 이유는 조사대상자가 만 15세 이상인 사람인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하여 그 시점에서 만 15세가 되는 사람부터가 조사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정해 놓은 것이다. 조사방법은 조사담당직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함으로 이루어진다.

결과는 매월 전국 및 시도별로 월별, 분기별 및 연간동향을 분석수룩한 『경제활동인구연보』 및 『경제활동인구월보』를 발간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연보에는 월보에서 보다 세부적인 자료들을 포함하여서 연간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월보에는 연보에서 주요한 자료들만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국민생활시간조사

1999년 통계청이 조사한「국민생활시간조사」는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둘째, 무보수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과 그 외 다양한 생활시간을 파악하여 국민계정에 가계 부문 생산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각종 노동, 복지, 문화, 교육, 교통 관련 정책 수립 및 학문적 연구활동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크게 가구관련사항, 개인관련사항, 시간일지(time-diary)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다. 개인관련사항의 인구학적 특성(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을 볼 때, 생활시간조사도 가구조사이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된 만큼 조사방식에 있어서 가구조사가 아닌 개인 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경제적 변인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시간조사를 위한 조사방식에는 '시간일지 설계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간일지 설계방식'에는 사전코딩(pre-coded) 방법과 사후코딩(after-coded) 방법이 있다. 사전코딩 시간일지는 발생 가능한 행동들을 연구자가 미리 분류하여 그 행동목록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응답자가 자신이 행한 행동의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시간일지에 그 번호를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본과 영국 등에서 채택했던 방법이다. 사후코딩 시간일지는 일정한 간격의 시간에 따라 공백의 줄을 만들어 놓고 그 빈 줄에 응답자가 일기를 쓰듯 자신이 한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언어로 적게 하고, 회수한 후에 기입되어 있는 행동을 미리 구축해 놓은 일련의 행동분류체계에 맞추어 해당되는 번호를 코딩요원이

부호화 작업을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최종 확정된 조사표도구와 방법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소책자 형태의 사후코딩 시간일지를 이용하여 연속된 이틀씩을 기입하는 것이다(손애리, 2001). 한편,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2001년 초에 5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중합분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세미나를 개최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시간조사는 이전에도 있어왔고, 통계청에서는 「국민생활시간조사」가 1999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2000년에는 「1999 생활시간조사」라는 자료가 출간되었고, 앞으로 5년마다 「국민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3. 임금구조기본조사

임금구조기본조사는 1968년부터 실시된 조사로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직종, 산업, 지역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정책 및 노동정책 입안과 기업의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의 문항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직종, 산업, 지역별로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분류별로 임금구조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고 있으나, 좀 더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까지 나타내지는 않고 있어서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할 때,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금구조기본조사의 조사방법은 자계식¹⁾으로써, 표본사업체 노무담당자가 작성해서 제출한다. 결과는 산업별, 직종별, 근속년수별, 경력년수별로 집계하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로 매년 공표하고 있다(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2000).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있어서 임금률에 대한 통계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 임금률은 가치평가 방법이 어떤 것이 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통계치가 사용되게 된다. 전문가 대체법과 종합적 대체법

1) 조사표 기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조사방법의 유형으로서 자계식은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것이고, 타계식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면접조사방법과 전화조사방법은 타계식에 의한 것이며, 배포조사방법, 우편조사방법, 집합조사방법은 자계식에 의하는 것이다.

등 시장비용법은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임금근로자로 대체할 때 지불해야 하는 임금수준을 무급노동의 경제적 평가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4. 도시기계조사

도시기계조사는 도시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함으로써 국민소비수준 변화의 측정하고 분석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자료 그리고 국민소득추계의 기초자료,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산정자료, 국민주택 공급 대상의 기준설정자료, 각종경제, 사회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도시기계조사의 조사 항목에는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가구주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 가구원에 관한 사항, 주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조사의 가계수지 항목분류는 1995년에 교육·교양오락을 교육과 교양오락으로 분리하여 10대 비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조사문항에서도 나타났듯이, 도시기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생활시간조사와 같은 대표적인 가구조사에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매월 조사개시 전에 조사표(가계부)를 조사대상 가구에 배부하여 조사대상가구에서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과 품목명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 즉, 가계부 기장방식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매월 조사된 자료는 전산처리 되어 분기별로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으로 공표하고 『한국통계월보』에 수록하며 연 1회 『도시기계연보』를 익년도 5월에 발간한다.

V.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통계자료 분석

1.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인간의 활동을 분류함에 있어서 가사노동 자체를 비경제활동

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포함되는 변수인 가사노동참여수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가사노동 부분의 인구수를 사용한다는 점은 일관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앞서서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통계자료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사노동을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는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볼 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가사노동의 생산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개념에 대한 범위와 그 집단의 범주가 매우 모호하게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인(1997)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력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의 범위가 비논리적이며 자의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경제활동 개념에 따라서, 자급자족적 생산 가운데, 일차산업의 산물로 만든 것은 경제활동이고, 공업생산의 결과물을 이용한 것은 비경제활동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매우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가족원을 위한 점심준비는 비경제적이고, 일꾼을 위한 점심준비는 경제활동이라는 정의는 하나의 활동 단위를 조작적으로 갈라놓으며 자의적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무급가족종사자'는 경제활동으로 분류가 된다. 무급가족종사자란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

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만약 주부가 가사노동을 주당 18시간 이상을 하였을 경우에도 경제활동으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고, 가사노동 시간을 고려하여 볼 때 경제활동의 범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여성은 하루 평균 3시간 57분, 평일은 3시간 58분, 토요일은 4시간 2분 그리고 일요일은 3시간 54분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것은 일주이면 총 26시간 6분을 무급 노동을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사항을 근거로 우리는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이 경제활동개념을

볼 때, 비경제활동이 아닌 경제활동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가사노동이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47.4%이고, 남성의 경우는 74.4%로 나타나지만, 만약 가사와 육아를 경제활동으로 포함시킨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82.2%로 약 2배 정도로 증가하여, 남성 경제활동인구 76.8%보다도 더 많아지게 된다(표 2) 참고).

또한 <그림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는 곡선은 남성경제활동인구의 곡선과는 달리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인구가 M자형을 그리는 이유는 여성들은 25~35세가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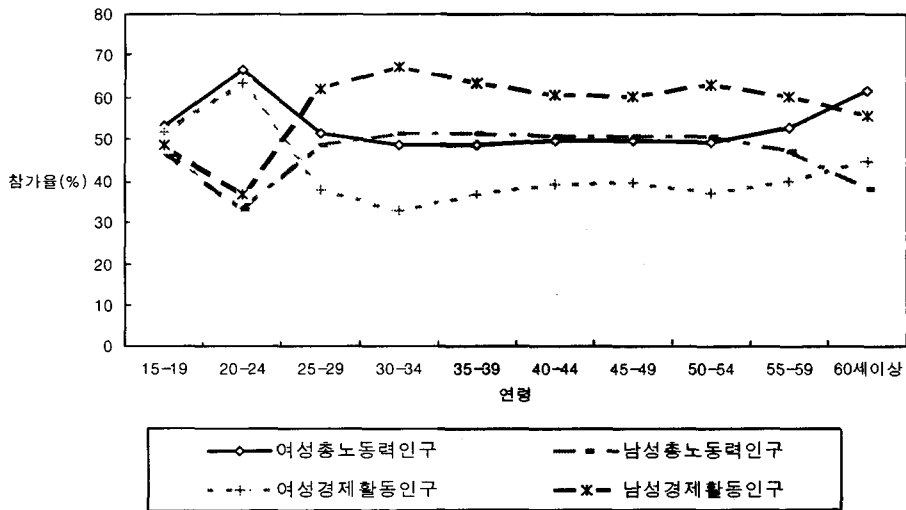
<표 2> 1999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분류 성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합계	가사 & 육아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합계
여성	18,434(100)	8,303(45.0)	442(2.4)	8,745(47.4)	6,415(34.8)	3,274(17.8)	9,689(52.6)
남성	17,331(100)	11,978(69.1)	911(5.3)	12,889(74.4)	419(2.4)	4,023(23.2)	4,442(25.6)

자료 :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원자료이용

<그림 3> 연령별 총노동력 인구



자료 :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원자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그만두게되기 때문이다. 또 그 이후의 40~55세 층이 되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노동력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성총노동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에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가사·육아의 인구수를 더하여서 나타낸 것이다. 여성총노동력인구의 25세-59세의 곡선 모양이 남성의 곡선 모양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녀 모두가 20-24세에서 곡선모양이 위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여성은 24세가 되면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을 하는 반면에 남성은 병역의 의무 때문에 24세에 취업을 못하고 더 늦게 취업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60세 이상에서 그래프의 모양이 위와 같은 이유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서 수명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과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사노동에 대해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생산물의 시장대체물을 선정하거나 가사노동의 산출량 단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개념이 확대되고 재정의 되어야한다. 즉 노동력 조사의 노동력개념을 총노동력 기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이재인, 1997; 윤소영, 1998). 총노동력(total labor force)이란 기존의 경제활동의 개념에 가사노동인 가사와 육아를 포함시켜서 나타내는 확대된 노동력 지표를 가리킨다. 따라서 일단은 경제활동인구 개념은 현재의 협의의 노동의 개념보다는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설명할 수 있는 총노동력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2. 국민생활시간조사

1)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

「1999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개인유지 부분에서 [121-123 식사 및 간식]과 4. 가정관리의 [411-413 음식준비 및 정리]의 분류가 모호함을 들 수 있다. 물론 그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121-123 식사 및 간식]은 개인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대상자가 직접 음식을 먹는 시간이 해당되며

필수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411-413 음식준비 및 정리]는 식사를 위한 음식마련과 그에 따른 뒤처리해당된다. 그러나 실제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들에게는 식사와 관련된 업무가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주부가 가족들 식사를 챙겨주면서 자신도 식사를 할 경우는 어느 영역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의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

둘째, [2. 일]과 [4. 가정관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분류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는 그 일을 하는 목적, 화폐수입의 유무, 이루어지는 장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999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표는 [2. 일]과 [4. 가정관리]를 화폐수입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앞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논 하였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하여 볼 때, 이러한 [2. 일]과 [4. 가정관리]의 분류에 있어서 화폐수입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를 가시화 하기 위함이라는 국민생활시간조사의 목적과 의의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분류 체계에 있어서 "노동"이라는 커다란 분류 안에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을 다시 분류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4. 가정관리]·[5. 가족보살피기]와 [6. 참여 및 봉사활동]·[7. 교제 및 여가활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류의 모호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물론 조사대상자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와 개인적인 특징 등에 대해서 조사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호함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712 가족·친척과의 교제]가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여가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을 것 같다. 식사한 후 커피 등을 마시며 대화한 경우도 여성들에게는 끊임없는 가사노동의 연속으로 간주된다. 이는 행위자-수혜자의 일치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사노동과 관련된 중복생산이나 동시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가사노동은 동시에 일어나는 활동의 중요도에 근거해서 일차적

활동과 이차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차적 시간(Secondary time)이란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차적 시간을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는 [421 세탁 및 세탁물 널기]의 경우만 이차적 시간에 대한 고려해서 “세탁기 작동 중에 다른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을 코딩”이라는 제언을 했고, 그 외의 경우는 전혀 중복행동에 대한 언급이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생활시간조사에서 중복행동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생활시간조사의 수정·보완

생활시간조사의 무보수 가사노동의 활동분류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항목과 서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가사노동 가치에 상응하는 대체임금 변수의 존재여부가 가치평가에 있어서의 정확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좀 더 발전된 조사가 필요한데, 이는 이미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생활시간조사에 임금과 노동력에 대한 데이터를 확대 또는 혼합시킴으로써 수정·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3) 시간조사의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조사는 after-coded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응답자가 활동상황을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행동분류체계에 구속받지 않고,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활동형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조사표본량이 늘어나고 공란이 많아서 응답자가 부담감을 가지고, 또한 재코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코딩하는 사람의 주관에 개입될 소지가 있다.

3. 임금구조기본조사

1) 대체직종의 선정

〈표 3〉에서는 「1999 생활시간조사」가 나온 이후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행한 연구들에서의 대체직

종을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1999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에 맞추어서 대체직종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슷한 직종분류를 보이고 있다. 문숙재·윤소영(2001)의 연구에서는 김태홍(2001)과 김준영(2001)의 대체직종과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김태홍(2001)과 김준영(2001)의 연구에서는 문숙재·윤소영(2001)와 비교하여 볼 때, 대체임금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세한 분류에 대한 직종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장점을 보인다. 반면에 문숙재·윤소영(2001)의 연구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직종의 임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체 직종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김태홍(2001)과 김준영(2001)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세세한 직종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보다도 더 세세한 직종에 대한 임금값을 적용시키지 않았다. 둘째, 모든 연구에서 가사노동을 행하는 자의 기술력 또는 숙련도, 경력, 교육수준 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이렇게 선행연구들이 가사노동 활동분류에 대한 대체직종을 각각 다르게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에서 가사노동 가치평가 액수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준영(2001)은 조사대상직종을 좀 더 세분화하여 무보수 가사노동과 관련된 직종에 대한 정기적인 특별임금조사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통계조사의 목적을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두고, 구체적으로 각 가사노동의 행동영역에 적절한 대체직종과 대체임금까지 포함하고 있는 좀 더 복합적인 구성의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그 방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의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2) 대체임금의 적용

대체임금률은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에 따라서 각각 다른 임금률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전문가 대체법과 총합적 대체법 등 시장비용법은 무급노동을

〈표 3〉 국내 연구자들의 무보수 가사노동 행동분류에 대응하는 대체직종

활동분류	활동내역	김태홍(2001)	김준영(2001)	문숙재·윤소영(2001)
41 음식준비 및 정리	411 식사준비(요리, 식탁차리기) 412 설거지, 식후정리 413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512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 741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 근로자	512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 741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 근로자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741 식품가공 및 관련 기능 근로자
42 의류관리	421 세탁 및 세탁물 널기 422 옷 정리(의창정리 등) 423 다림질, 바느질, 의류 손질 424 의류수선·세탁 서비스 받기 425 재봉, 뜨개질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세탁원 512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세탁원 743 목재, 섬유, 가죽및관련 재료수공예근로자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세탁원 512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세탁원 743 목재, 섬유, 가죽및관련 재료수공예근로자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세탁원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913 가사및관련조력원,청소원, 세탁원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743 목재, 섬유, 가죽및관련재료수공예근로자
43 청소 및 정리	431 방·물품 정리 432 집안 청소(쓸기, 닦기) 433 그 외 청소 및 정리	512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 914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	512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 914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913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세탁원
44 집관리	441 가재도구·집수리 서비스 받기 442 세차, 차량관련 서비스 받기 443 그 외 집 관리	712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근로자 914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	712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근로자 914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	914 건물관리인, 창문 및 관련 청소원 832 자동차 운전원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45 가정관리 물품구입	451 시장보기 452 쇼핑하기(의복, 신발 등) 453 내구재 구매 관련 행동	512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 341 금융및판매 준전문가	512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 341 금융및판매 준전문가	34 기타 준 전문가 13 종합관리자
46 가정경영	461 가계부 정리 462 가정계획(저축, 가족회의) 463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412 계수사무원 131 종합관리자 412 계수사무원	412 계수사무원 131 종합관리자 412 계수사무원	412 계수사무원 13 종합관리자 412 계수사무원
49 84	499 기타 가사일 841 가정관리 관련 이동	512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	512 가사 및 음식 서비스 근로자	51 대인 및 보호 서비스 근로자
51 미취학아동 돌보기	511 신체적 돌보기 512 아이에게 책임어주기, 놀아주기 519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233 초등 및 학령 전 교육 교사	233 초등 및 학령 전 교육 교사	51대인및보호서비스근로자 23 교육 전문가 51대인및보호서비스근로자
52 초·중 고등학생 보살피기	521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522 숙제 및 공부 봐주기 523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방문 529 기타 학생 보살피기	233 초등 및 학령 전 교육 교사	233 초등 및 학령 전 교육 교사	51대인및보호서비스근로자 23 교육 전문가 51대인및보호서비스근로자
53 54 55 85	530 배우자 보살피기 540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0 그 외 가족 보살피기 851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323 간호및조산 준전문가	323 간호및조산 준전문가	51대인및보호서비스근로자

수행하는 근로자를 임금근로자로 대체할 때 지불해야 하는 임금수준을 무급노동의 경제적 평가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무보수 노동에 속하는 각각의 활동을 분류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의 시장임금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활동에 대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 문숙재·윤소영(2001)은 해당 가사노동활동이 대체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사회화가 가능한지(제 3자 기준 : the 3rd principle) 여부에 근거하여 유형 I 과 유형 II (Kulshreshtha & Gulab Singh, 1999)로 나누어 대체직종을 선정한 후, 유형 I 에 속하는 주로 가정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단순 작업으로, 그리고 유형 II 에 속하는 제 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활동은 유사한 해당 직종으로 대체하였다. 김준영(2001)과 김태홍(2001)의 연구에서도 그와 비슷한 기준으로 가사노동 활동을 분류하고 대체 임금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분류에 대한 대체 임금 책정은 단순노동의 강조에 의한 과소평가 및 과대평가의 문제점이 있으나 다른 방법에 비해 가사노동의 내용이 다양하며 여러 종류의 작업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종합적 대체법은 가사업무 전반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용해야 하는 파출부 또는 적절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직종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크게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으로 나누어본다면,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을 파출부의 임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사노동을 단순히 파출부의 노동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관리영역을 과소평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을 관리자의 임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사노동의 단순노동영역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기회비용법에서 적용되는 임금은 가구구성원들의 성별이나 연령별, 숙련도에 따라 구분된다. 이 방법에서는 개인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 기대되어지는 임금이 조사되는데, 실제 노동시장의 임금을 반영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대안적인 데이터의 결여로 인하여 노동력 밖에서 자신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자나 개인이 받는 임금이 적용된다. 이 경우 무급노동의 한계가치는 평

균가치보다 낮아진다. 또한 시장 임금은 무보수노동의 한계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 임금을 적용하여 무보수노동의 총 가치를 산출하면, 무보수노동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Ferber & Bimbaum, 1980). 그러나 개인의 가사노동 숙련도나 가치가 학력과 비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령과 학력을 동시에 고려한 임금률의 적용은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대체임금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점으로, 임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의 임금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의 임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가치평가의 방법과 함께 적용되는 임금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OECD National Accounts(2000)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시, 시장 임금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적인 임금차별에 의한 낮은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므로, 이 점은 가사노동에서의 여성의 기여도 측면에 있어서도 과소평가를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4. 도시가계조사

도시가계조사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계생산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가계 생산에서 사용된 자본 소비 예측에 필요한 저량의 가계 자본 측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는 시장 재화 및 서비스에 해당하는 중간소비재의 자료로는 적합하지만, 내구재에 대한 자본소비에 대한 자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가계생산에 쓰여진 소비자 내구재의 자본소비를 측정하기 위해 그 내구재에 대한 지출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자본소비에 대한 개념은 중간소비재의 개념과는 달리, 가사노동을 위해서 식료품과 같이 전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을 위해서 내구재의 일부가 소모되는 것이다. 즉, 그 내구재는 가사노동에서 단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5년-10년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자본소비에 그 내구재에 대한 가격을 사용한다면 그 내구재를 중간소비재로 보는 오류가 생기게 되고 당연히 과대평가가 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내구재의 감가상각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내구재의 내용년수를 알아야 하는데, 고정자본소모는 내용년수와 최초의 자산가격을 기준으로해서 계산될 수 있다. 그런데 도시가계조사에서는 내구재에 대해서 단순히 그 최초 가치만을 조사하고, 내구재의 사용년수에 대한 조사는 없기 때문에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내구재의 자본소모에 대해서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그 품목에 대해서도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적합하도록 그 분류의 기준을 정하고 더 세분화하여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가계조사는 그 조사대상이 도시의 가계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가 경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가계와 농·어가의 통합된 가계지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기존의 GDP에 산입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으로, 그 산정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가치만을 산정하고, 그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가사노동을 위해 사용되는 중간소비재와 고정자본의 가치평가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사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하는데 앞서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존의 GDP에 가사노동 가치의 산입을 위해 중간소비재와 고정자본 가치평가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많은 통계자료 중에서 대표적인 기초통계자료 4가지를 분석하였으며, 각 통계자료의 실제수치에 대한 분석까지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통계의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써 유용성과 한계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통계자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련자료를 통합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민생활시간조사, 임금구조기본조사, 도시가계조사 등을 가사노동 가치산정을 위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로써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사들을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다른 방안으로써 앞에서 제시한 것은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이다. 현재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필요한 자료인 임금자료와 노동력자료 그리고 가계지출자료 등이 포함되어서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총 지표들이 모두 담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제각기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들에 대한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고, 각각의 통계자료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초통계자료의 조사대상이 현재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구 단위와 개인(가족 구성원 개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인구 및 노동력 조사에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활동으로 포함시킨 총노동력 개념을 도입한다면, 이를 근거로 가계소득이나 개인의 직업에 따른 임금 및 소득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생활시간조사는 객관적인 시간사용자료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 행동분류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또한 임금을 적용시키는데에도 각 연구자들마다 대체직종 선정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앞으로 가계위성계정을 위해서는 행동분류나 대체직종의 선정에 있어서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위성계정을 위한 통합적인 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서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가계위성계정을 위한 통합적인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다섯째,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관련된 통계자료들은 현재의 생활시간조사와 같이 조사계획시기부터 가사노동의 가치와 생산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조사의 목적 등에 반영이 된다면,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5년마다 진행될 예정인 시간사용연구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GDP나 GNP는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무보수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많은 통계자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기초통계자료 4가지만을 분석하였으며, 각 통계자료들에 대해서 실제 수치들에 대한 분석까지는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분석이 연구자의 관점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점과 제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되어 제시되는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함으로써 가계위성계정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사노동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가 산정된다면, 기존의 사보험제도, 재산분할청구권, 국민연금 등과 같은 법적 정책적 제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주부의 노동력을 반영하고 주부의 경제적 능력과 자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통계자료들의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초통계자료의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선희(199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 김정희(1994).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대(對) GNP 비율 추정, 경북대학교 가정학박사학위논문. p20-27
- 3) 김준영(2001).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결과, pp. 13-36.
- 4) 김태홍(2001).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여성의 무급노동 평가와 정책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여성부·UNDP.
- 5)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0.
- 6) 문숙재(1990). 가정생산 : 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신광출판사, p121-139.
- 7)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 8) 문숙재·김순미·정순희(1994).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학지사
- 9) 문숙재·윤소영(1998). 대한가정학회지. 36(4). 가사노동의 정책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I : 가사노동의 측정을 위한 제안.
- 10) 문숙재·윤소영(2000). 결혼과 노동, 교문사.
- 11) 문숙재·윤소영(2001).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 프로그램개발의 기초분석,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결과, 통계청.
- 12) 문숙재·정순희·허경옥(2000). 가족경제학, 교문사.
- 13) 손애리(2001). 생활시간조사, 개발현황과 전망,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결과, pp. 1-12.
- 14) 윤소영(1997).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5) 윤소영(1998). 대한가정학회지. 36(4). 가사노동의 정책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I : 가사노동의 측정을 위한 제안.
- 16) 이승신·김기욱·김경자·심영·정순희(1996). 가계 경제학, 학지사.
- 17) 이재인(1997). 공식통계에 대한 여성학적 재검토-우리나라 노동력 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8) 정무장관(제2)실(1997). 가사노동가치 평가기준과 제도화 방안, 정책자료 97-6, p36-43.
- 19) 정영금(1989).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

- 간행).
- 20) 통계청(1999).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 21) _____(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 22) _____(2000). 『도시가계연보』
 - 23) 한국통계청 홈페이지.
 - 24) Fukami, M(1999). Monetary valuation of unpaid work in 1996 -Japan-, Paper presented at Time Use Seminar, Ahmedabad, India, 7-10 December 1999.
 - 25) Goldschmidt-Clermont, L, and Pagnossin-Aligisakis, E.(1999): Households' non-SNAproduction: Labor time, value of labour and of product, and contribution to extended private consumptio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19-529, Series 45, No. 4, December 1999.
 - 26) Hirway, I(1999). Time Use Studie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with Reference to the Indian Time Use Survey,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n Time Use Seminar, Ahmedabad, India, 7-10 December 1999.
 - 27) Hirway, I(2000). Valuation of Unpaid Work: Issues Emerging from the Indian Pilot Time Use Survey, Paper presented at Training Workshop of Statistical Aspects of Integrating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11-15 September 2000, Bangkok
 - 28) Hirway, Indira(1998). Time Use Survey: India,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Human Resource Accounts, 8-10 December 1998.
 - 29) Ironmonger, D(1999). An overview of time use surveys.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n Time Use Seminar, Ahmedabad, India 7-10 December 1999.
 - 30) Ironmonger, D. S(2000). Household Production and the Household Economy, Department of Economics Research Paper, No 759 (Dep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elbourn).
 - 31) Kim, Tae-hong(1997). The economic valuation of women's unpaid work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UNDP/UNSD/UNIFEM "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in Seoul, Republic of Korea(28-30 May, 1997)
 - 32) Lazo, L. S(2000). Analyzing the Policy Implications of Time Use Data, Paper presented at Training Workshop on Statistical Aspects of Integrating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Bangkok, 11-15 September 2000.
 - 33) Margarita F. Guerrero(1997). Survey Data Paid and Unpaid Work : New Sources from Policy-Driven Initiatives . paper presented at the UNDP/UNSD/UNIFEM "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 in Seoul, Republic of Korea(28-30 May,1997)
 - 34) OECD National Accounts(2000). Household production in OECD Countries : Data sources and measurement methods. National Accounts Publications.
 - 35) Sousa-Poza, A(1999). Assigning Monetary Values to Unpaid Labour Using Input Based Approaches: The Swiss Case, Proceeding of the 52nd ISI Session. Finland Statistics.
 - 36) Varjonen, J. and Hamunen, E(1999). Proposal for a Satellite Account of Household Production, Paper presented at the OECD meeting of national accounts experts, Paris, 21-24 September 1999.